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3권 행정학개론 32~32p	개념,공식-설명	<p><b>세이어(Sayer)의 법칙</b></p> <p>세이어(Sayer)의 법칙이란 행정학의 기술성(技術性)을 강조한 것으로 행정과 경영은 중요하지 않은 면에서만 닮았다는 이론이다. 공사행정이원론, 정치행정일원론을 강조한 것이므로 사이먼(Simon)의 정치행정이원론을 반박한 모형이다.</p>	<p><b>세이어(Sayer)의 법칙</b></p> <p>세이어(Sayer)의 법칙이란 행정의 공공성과 정치성을 강조한 것으로 행정과 경영은 중요하지 않은 면에서만 닮았다는 이론이다. 공사행정이원론, 정치행정일원론을 강조한 것이므로 사이먼(Simon)의 정치행정이원론을 반박한 모형이다.</p>
		수정 사유	개념 설명 오류
3권 행정학개론 257~257p 번호 : 08	해설	<p>[❷ ✗] 국가공무원법은 임용방식과 업무특성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.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다(국가공무원법 제2조)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.</p>	<p>[❷ ✗] 국가공무원법은 임용방식과 업무특성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.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다(국가공무원법 제2조)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.</p>
		수정 사유	해설 수정
1권 민법총칙 306~306p	개념,공식-설명	<p>(4) 시효완성사실을 알았을 것</p> <p>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(대판 2001.6.12. 2001다3580).</p>	<p>(4) 시효완성사실을 알았을 것</p> <p>과거 대법원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(대판 2001.6.12. 2001다3580),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'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.'는 법리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(대판 2025.7.24. 2023다240299[전합]).</p>
		수정 사유	판례 변경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 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